[별지 제1호서식] (2024.10.28. 개정)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 (일시상환용)

① 채무확인

(단위 : 원)

금융회사	주채무자	대출과목	원금잔액	이자	제비용	합계	소멸시효 완성여부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Y"로 표시되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고객정보

※ 채무조정 승인을 위해 아래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통필수정보

성 명		생년월일	- ******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휴대폰번호	
고객번호	직원기재란		

※ 신고된 최종 주소지·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서면통지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통필수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공통부가정보

신청인 구분	☐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어음발행 · 배서인 ☐ 기타 ( ) ※ '기타'에는 가족, 친인척, 동료, 지인 등 구체적인 관계를 작성합니다.		
우편물 수령방법 (중복 선택 가능)	☐ 자택 ☐ 이메일 ☐ 문자 ☐ 카카오톡 ☐ 전자문서 ☐ 팩스 ☐ 전체		
	채무조정 효력 상실 통지, 주택 경매 예정통지 등 채무자 권리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공사는 신고된 최종 주소지로 등기 우편 등의 서면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 근로 ☐ 사업 ☐ 연금 ☐ 임대 ☐ 기타 ( )		
직 장 명		연소득(만원)	
주거구분	☐ 자가(☐본인 ☐배우자 ☐가족) ☐ 전세 ☐ 월세 ☐ 기타		
주거형태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 ☐ 기숙사/사택 ☐ 기타		
부채현황 I	☐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이상		
부채현황II	☐ 은행 ☐ 저축은행 ☐ 카드사·캐피탈사 ☐ 신협·마을금고 ☐ 대부업 ☐ 기타 ( )		

재산정보

재산유무	☐ 있음 ☐ 없음	법적조치 유무	☐ 있음 ☐ 없음

종별	지목	소재지	면적(㎡) (a)	공시지가(원) (b)	가격(원) (a×b)

예금/공탁금 등 채권	☐ 있음 ☐ 없음	사건번호/금액	
자동차/선박/기계기구 등	☐ 있음 ☐ 없음	차종/등록번호	

※ 종별은 토지/상가/주택/아파트 등을 기재하며, 지목은 토지의 경우 대지/전/답 등을 작성
※ 지분인 경우 '면적×지분율'을 기재 ※ 상속재산(미등기 포함)도 기재대상임

〈 확약사항 〉

①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무조정 승인 또는 채무부담액 완납의 이후라도 즉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상환한 금액은 임의 상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아울러, 은닉 · 미신고재산을 포함하여 소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② 채무조정 승인 후 **신규로 재산을 취득하고,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취득한 신규 재산의 회수가능액을 포함하여 채무부담액을 재산정한 후 종전 채무조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재약정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확약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20 . . . 신청인 : (서명)

3 채무조정안

(단위 : 원)

추가감면유형	추가감면유형 Ⅰ · Ⅱ / 해당 유형		
일시상환 추가감면 신청	☐ 예 ☐ 아니오	채무부담액(추가감면액)	
상환(예정)일		입금(가상)계좌	(은행) ***-***-******

* 공사는 채무변제금을 직원이 직접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위의 계좌로 채무변제금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직접 수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신청인이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환급계좌 신고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 ***-***-******

본인은 위의 각 항목에 대해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였으며 위와 같이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사본을 수령함	(서명)

추가감면 유형 I

구분	유형	세부요건	구비서류	발급기관	감면율
생활안정	기초수급자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90%
	기초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80%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70%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3급)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장애인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 미경과 복지카드)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9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3급)	장애인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 미경과 복지카드)		8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급~6급)	장애인 증명서 및 (또는 유효기간 미경과 복지카드)		70%
	장애인부양자	장애인 부양자(1~6급) 또는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 미경과 복지카드),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보훈대상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3급	보훈대상자증명서(상이등급 표시)	국가보훈처	90%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대상자증명서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70%
	유족	보훈대상자의 유족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족증 또는 유가족확인서		
의료	장기입원자, 중증질환자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입원확인서, 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	병원	80%
노인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감면 불가)	국세청	80%
아동	다자녀가족	3명 이상 미성년자 부양자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7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영유아가족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부양자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이재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피해자 (사유발생일 1년이내)	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추가감면 유형 Ⅰ

구분	유형	세부요건	구비서류	발급기관	감면율
자립지원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대학생 34세 이하 미취업자	군입영사실확인서,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병무청, 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70%
	중소기업인	중소기업인 대표자 (사업자 대출금)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보증 당시 중소기업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명원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대출 당시 개인사업자), 기타증빙서류(사업용도 대출 확인 필요 시)	대법원/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에 준하는 매출규모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그 밖의 연매출 증빙서류 포함)	국세청	
	창업실패 사업자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창업기업(인) (창업으로 인한 사업자 대출금)	창업기업확인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아이디어 수상사실 증명서류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행정안전부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사본	고용센터	
	국민취업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추가감면 유형 Ⅱ

구분	유형	세부요건	구비서류	발급기관	감면율
특수채무 관계자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복지센터	60%
	실종자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법원 실종신고서)		
	구속수감자	잔여 형기 2년 초과	수용증명서	법무부	
	주민등록 말소자	말소기간 3년 이상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복지센터	
	특수채권	상각채권	-	-	90%
	소액채무자	총채무원금(다중채무 포함) 2백만원 이하	-	-	

※ 구비서류 중 일부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발급가능

채무조정 담당자

성명		담당부점	
전화번호		FAX	

붙임

채 무 조 정 서(일 시 상 환 계 획)

(단위 : 원)

성 명		신청인 구분	
원금잔액(원)		채무부담액(원)	
상환기일		제비용	
계좌번호	(　　은행)		

□ 본인은 공사와의 채무조정 관련 주요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공사의 채무조정안에 동의**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통지됨에 동의합니다.

(□ 우편(자택) □ 우편(신청주소지) □ 이메일 □ 문자 □ 전자문서 □ 기타)

20　.　.　.　신청인 :　　(서명)

※ 채무조정 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담당부점	
전화번호		FAX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 (분할상환용)

1 채무확인

(단위 : 원)

금융회사	주채무자	대출과목	원금잔액	이자	제비용	계	소멸시효 완성여부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Y"로 표시되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고객정보

※ 채무조정 승인을 위해 아래의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통필수정보

성 명		생년월일	- ******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고객번호	직원기재란		

※ 신고된 최종 주소지·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서면통지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통필수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공통부가정보

신청인 구분	☐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어음발행 · 배서인 ☐ 기타 ( ) ※ '기타'에는 가족, 친인척, 동료, 지인 등 구체적인 관계를 작성합니다.	
우편물 수령방법 (중복 선택 가능)	☐ 자택 ☐ 이메일 ☐ 문자 ☐ 카카오톡 ☐ 전자문서 ☐ 팩스 ☐ 전체	
	채무조정 효력 상실 통지, 주택 경매 예정통지 등 채무자 권리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공사는 신고된 최종 주소지로 등기 우편 등의 서면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 근로 ☐ 사업 ☐ 연금 ☐ 임대 ☐ 기타 ( )	
직 장 명		연소득(만원)
주거구분	☐ 자가(☐본인 ☐배우자 ☐가족) ☐ 전세 ☐ 월세 ☐ 기타 ( )	
주거형태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 ☐ 기숙사/사택 ☐ 기타	
부채현황 I	☐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이상	
부채현황 II	☐ 은행 ☐ 저축은행 ☐ 카드사·캐피탈사 ☐ 신협·마을금고 ☐ 대부업 ☐ 기타 ( )	

재산정보

재산유무	☐ 있음 ☐ 없음	법적조치 유무	☐ 있음 ☐ 없음

종별	지목	소재지	면적(㎡) (a)	공시지가(원) (b)	가격(원) (a×b)

예금/공탁금 등 채권	☐ 있음 ☐ 없음	사건번호/금액	
자동차/선박/기계기구 등	☐ 있음 ☐ 없음	차종/등록번호	

※ 종별은 토지/상가/주택/아파트 등을 기재하며, 지목은 토지의 경우 대지/전/답 등을 작성
※ 지분인 경우 '면적×지분율'을 기재 ※ 상속재산(미등기 포함)도 기재대상임

〈 확약사항 〉

①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무조정 승인 또는 채무부담액 완납의 이후라도 즉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상환한 금액은 임의 상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아울러, 은닉 · 미신고재산을 포함하여 소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② 채무조정 승인 후 **신규로 재산을 취득하고,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취득한 신규 재산의 회수가능액을 포함하여 채무부담액을 재산정한 후 종전 채무조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재약정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확약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20 . . . 신청인 : (서명)

③ 채무조정안

(단위 : 원)

추가감면유형	추가감면유형 Ⅰ · Ⅱ / 해당 유형		
채무부담액		분할상환기간	
매월 상환(예정)일		입금(가상)계좌	(은행) ***-***-******

* 공사는 채무변제금을 직원이 직접 수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위의 계좌로 채무변제금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직접 수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환급계좌 신고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 ***-***-******

본인은 위의 각 항목에 대해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였으며 위와 같이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사본을 수령함	(서명)

변제계획안

(단위 : 원)

상환회차	상환기일	분할상환금	
(제비용) 포함			

채무조정 담당자

성명		담당부점	
전화번호		FAX	

본인은 위의 각 항목에 대해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였으며 위와 같이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사본을 수령함	(서명)

추가감면 유형 Ⅰ

구분	유형	세부요건	구비서류	발급기관	감면율
생활안정	기초수급자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90%
	기초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80%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70%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3급)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장애인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 미경과 복지카드)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90%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급~3급)	장애인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 미경과 복지카드)		8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급~6급)	장애인 증명서 및 (또는 유효기간 미경과 복지카드)		70%
	장애인부양자	장애인 부양자(1~6급) 또는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또는 유효기간 미경과 복지카드),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보훈대상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3급	보훈대상자증명서(상이등급 표시)	국가보훈처	90%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대상자증명서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70%
	유족	보훈대상자의 유족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족증 또는 유가족확인서		
의료	장기입원자, 중증질환자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입원확인서, 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	병원	80%
노인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감면 불가)	국세청	80%
아동	다자녀가족	3명 이상 미성년자 부양자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7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영유아가족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부양자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이재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피해자 (사유발생일 1년이내)	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추가감면 유형 Ⅰ

구분	유형	세부요건	구비서류	발급기관	감면율
자립지원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대학생 34세 이하 미취업자	군입영사실확인서,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병무청, 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70%
	중소기업인	중소기업인 대표자 (사업자 대출금)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보증 당시 중소기업 대표자), 사업자 등록증명원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대출 당시 개인사업자), 기타증빙서류(사업용도 대출 확인 필요 시)	대법원/국세청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중 간이 과세자에 준하는 매출규모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그 밖의 연매출 증빙서류 포함)	국세청	
	창업실패 사업자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창업기업(인) (창업으로 인한 사업자 대출금)	창업기업확인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아이디어 수상사실 증명서류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행정안전부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사본	고용센터	
	국민취업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추가감면 유형 Ⅱ

구분	유형	세부요건	구비서류	발급기관	감면율
특수채무 관계자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복지센터	60%
	실종자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법원 실종신고서)		
	구속수감자	잔여 형기 2년 초과	수용증명서	법무부	
	주민등록 말소자	말소기간 3년 이상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복지센터	
	특수채권	상각채권	-	-	90%
	소액채무자	총채무원금(다중채무 포함) 2백만원 이하	-	-	

※ 구비서류 중 일부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발급가능

붙임

채 무 조 정 서(분 할 상 환 계 획)

(단위 : 원)

성 명		신청인 구분	
채무부담액(원)		매월 분할상환금	
매월 상환일		분할상환기간	
선 납 금		제비용	
계좌번호	(　　은행)		

□ 본인은 공사와의 채무조정 관련 주요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공사의 채무조정안에 동의**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통지됨에 동의합니다.

(□ **우편(자택)** □ **우편(신청주소지)** □ **이메일** □ **문자** □ **전자문서** □ **기타)**

20　.　.　.　신청인 :　　(서명)

(단위 : 원)

상환회차	상환기일	분할상환금	
(제비용) 포함			

※ 담당자 및 연락처 :

성명		담당부점	
전화번호		FAX	

[별지 제3호서식]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무조정) (1/2)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의 채무조정 약정과 관련하여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 본 동의에 관한 철회, 열람 및 삭제요구 권리에 관한 내용은 교부되는 "개인(신용)정보 고객권리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 제도 개선을 위한 통계·조사·연구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5년까지 보유·이용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공사와의 모든 금융거래가 변제·완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무조정 약정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 · 이용 항목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개인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ㄴ 신용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약정개월, 만기),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정보
	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무조정) (2/2)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국민행복기금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 제도 개선을 위한 통계·조사·연구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5년까지 보유·이용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공사와의 모든 금융거래가 변제·완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무조정 약정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ㄴ 신용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약정개월, 만기),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내역정보
	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본인은 본 동의서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고객권리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아래는 신청인이 만 14세미만인 경우에만 작성이 필요하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부모 모두의 동의 또는 후견인의 동의)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정보는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하며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5일 이내에 파기합니다.

신청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관계(부 / 모)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관계(부 / 모)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2)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의 채무조정 약정과 관련하여 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 본 동의에 관한 철회, 열람 및 삭제요구 권리에 관한 내용은 교부되는 "개인(신용)정보 고객권리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 *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 · 이용 항목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개인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2/2)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제공받는 자와 동일**
조회 목적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공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사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공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채무조정, 소액대출 등) 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금융)거래계약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개인식별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성명,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ㄴ 신용거래정보	개설·발급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기업신용공여정보 등
ㄴ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등
ㄴ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ㄴ 공공정보	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국세체납, 지방세체납,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공사가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에 관한 고객 권리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아래는 신청인이 만 14세미만인 경우에만 작성이 필요하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부모 모두의 동의 또는 후견인의 동의)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정보는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하며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5일 이내에 파기합니다.

신청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관계(부 / 모)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관계(부 / 모)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상품서비스 안내 등) (1/2)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공사의 상품서비스 안내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공사는 상품서비스 안내 등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에서 수집한 고객님의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본 동의에 관한 철회, 열람 및 삭제요청 권리에 관한 내용은 교부되는 "개인(신용)정보 고객권리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동의등급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자세한 사항 QR코드 참고)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소액대출, 소액카드,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취업알선 안내 · 경품지급, 사은행사 · 고객 만족도 조사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 보유·이용 * 거래종료일이란 "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상환 및 채무와 관련된 소송, 법적 조치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단, 거래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소액대출, 소액카드,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취업알선 안내, 경품지급, 사은행사, 고객만족도 조사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폰 연락처	
	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안심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상품서비스 안내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전체 ☐	문자 ☐	이메일 ☐	전화 ☐	우편DM ☐

※ 상품서비스 안내 등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의 동의한 안내수단으로 본인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상품서비스 안내 등) (2/2)

정보활용 동의등급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자세한 사항 QR코드 참고)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국민행복기금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소액대출, 소액카드,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취업알선 안내 · 경품지급, 사은행사 · 고객 만족도 조사
보유·이용 기간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 보유·이용 * 거래종료일이란 "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상환 및 채무와 관련된 소송, 법적 조치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단, 거래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제공 목적과 관련된 소액대출, 소액카드,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취업알선 안내, 경품지급, 사은행사, 고객만족도 조사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폰 연락처
	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안심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아래는 신청인이 만 14세미만인 경우에만 작성이 필요하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부모 모두의 동의 또는 후견인의 동의)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정보는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하며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5일 이내에 파기합니다.

신청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관계(부 / 모)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관계(부 / 모)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채무조정 추가감면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공사의 상품서비스 안내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 동의에 관한 철회, 열람 및 삭제요청 권리에 관한 내용은 교부되는 "개인(신용)정보 고객권리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동의등급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자세한 사항 QR코드 참조)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채무조정 추가감면율 산정 및 상환유예 · 채무완제 이후 환급금 및 과오납금 반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일까지 보유·이용 * 거래종료일이란 "공사와 관련된 채무의 상환 및 채무와 관련된 소송, 법적 조치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단, 거래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채무조정 추가감면율 산정 및 상환유예, 채무완제 이후 환급금 및 과오납금 반환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민감정보	건강정보(장애, 장기입원, 희귀난치성질환), 수용(수감)증명정보 위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안심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폰 연락처, 환급용 계좌번호
ㄴ 기타개인정보	기초생활수급 증명정보, 차상위계층 증명정보, 한부모가족 증명정보, 실업급여수급정보, 북한이탈주민등록정보, 재난피해사실정보,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확인 및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 포함) 증명정보
	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안심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고객 권리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아래는 신청인이 만 14세미만인 경우에만 작성이 필요하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부모 모두의 동의 또는 후견인의 동의)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정보는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하며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5일 이내에 파기합니다.

신청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관계(부 / 모)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관계(부 / 모)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별지 제4호서식]

소득 진술서

본인은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월 평균 소득에 대한 증빙이 없어 아래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진술합니다.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귀사의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습니다.

※ 필수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통장사본 등

아 래

소득정보

신청인 구분	☐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어음발행 · 배서인 ☐ 기타 ( )		
소득구분	☐ 근로 ☐ 사업 ☐ 연금 ☐ 임대 ☐ 기타 ( )		
직장명/상호(단체명)		입사일/영업개시일	
업무 또는 업종		월 평균 소득	만원
직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20 년 월 일

채무관계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_별지 제8호 서식]

1. 이용기관 명칭 : 한국자산관리공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채무조정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선택	연번	행정정보명	선택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3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2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4	자동차등록증	
3	장애인증명서		1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4	한부모가족증명서		1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7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6	소득금액증명		18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7	폐업사실증명		19	중소기업확인서	
8	휴업사실증명		20	자동차등록원부(갑)	
9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21	자동차등록원부(을)	
10	차상위계층확인서		22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1	지방세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23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2	지방세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24	선박원부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귀하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별지 제6호서식] (2024.10.28. 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설명서

채무부담액의 산정

■ 채무부담액은 인수채권액(원금채권과 청구권 있는 가지급금의 합계액)과 재산의 회수가능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회수가능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관계자	채무부담액
주채무자 어음발행·배서인	인수채권액 × (1-감면율)
연대보증인	인수채권액 × (1/채권 인수시 채무 관계자 수) × (1-감면율)
위 각 상속인	각 채무관계자 채무부담액 × 상속지분 × 1/2 ※ 감면율은 60% 일괄적용

② '회수가능액 > 인수채권액'인 경우

채무관계자	채무부담액
주채무자	인수채권액+양도자산확정일부터 채무조정신청일까지 연체이자
어음발행·배서인	인수채권액
연대보증인	
위 각 상속인	각 채무관계자 채무부담액 × 상속지분

③ '회수가능액 < 인수채권액'인 경우

채무관계자	채무부담액
주채무자 어음발행·배서인	회수가능액 + (인수채권액 - 회수가능액) × (1-감면율)
연대보증인	회수가능액 + {(인수채권액 - 회수가능액) × (1/채권인수시 채무관계자 수)} × (1-감면율)
위 각 상속인	(회수가능액 × 상속지분) + {각 채무관계자 채무부담액(회수가능액 제외) × 상속지분 × 1/2}

감면율의 산정

■ 채무조정 감면율은 추가감면 Ⅰ·Ⅱ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추가감면 Ⅰ·Ⅱ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시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가감면 Ⅰ·Ⅱ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자의 소득, 연령, 연체기간 등을 감안한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시 소득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지수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부담액의 상환

■ 채무부담액의 상환 방법은 ❶ 일시상환, ❷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단, 채무부담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상환하여야 합니다.

① 일시상환 : 채무조정 약정 후 5일 이내에 즉시 상환가능한 경우로서 채무부담액에서 재산의 회수가능액을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추가감면이 가능합니다.

【추가감면액】
[{(채무부담액-재산의 회수가능액)>300만원}
÷ (1 + 공사 평균조달금리)^n]

② 분할상환 : 채무부담액을 최장 10년(120개월) 범위에서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분할상환금은 1천원 단위로 1만원 이상 금액으로 상환하고 1천원 미만금액은 최종회차에 포함됩니다.

■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장 12년, 추가감면 Ⅰ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기간 내에서, 상환기일은 변경 신청일 다음달부터 변경 가능합니다.

연체이자

■ 분할상환금이 연체될 경우에는 연체된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 7%의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채무조정 효력 상실 시 채권전액에 대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사유】
① 채무조정 신청 시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 때
② 3개월 이내(단, 일시상환 추가감면 대상은 5영업일 이내)에 일시상환 채무부담액을 미상환하거나,5영업일 이내에 1회차 분할상환금을 미상환한 때
③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청이 있는 때
④ 소유재산에 제3자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는 때
⑤ 분할상환금의 납입이 3개월 이상 지연된 때(단, 원금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관계자가 채무조정 약정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연된 때)

○ 위 표의 ①,③,④의 경우 최고·통지 등이 없어도 즉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⑤의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10영업일 전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금의 납입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때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②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
· 채무관계자
· 채무관계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채무관계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③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채무관계자
· 채무관계자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채무관계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④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인한 경우
· 채무관계자
· 채무관계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⑤ 실업(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⑥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채무관계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유예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유예는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채무관계자가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상환금 납입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구분	제출서류
특별재난지원 대상	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서 등 장기입원 또는 질환 증빙서류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청첩장
장례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확인서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사본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원

채무조정의 효력 부활

■ 분할상환금의 납입을 3개월 이상 지연(단, 원금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관계자가 채무조정 약정 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연)하여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미납된 분할상환금 및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채무조정의 효력이 부활되며 다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회분 분할상환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부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납한 분할상환금은 분할상환 잔여기간에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 유예

■ 분할상환 중 장기입원, 실직·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상환유예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번	대상자	상환유예기간	최장 기간
1	2개월 이상 장기입원	6개월	2년
2	실직·(휴)폐업		
3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승인		
4	채무조정 신청서 및 확약서의 추가감면 유형Ⅰ		
5	대학생	6개월	졸업하는 달의 말일
6	미취업청년(졸업자 포함)	6개월	3년
7	보건복지부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참여자	-	3년
8	미성년자	-	사유 해소 시
9	기초수급자		
10	현역입영자·사회복무요원		
11	구속수감자		
12	직업교육을 받고있는 자 (공사·공인 직업교육기관)		

■ 1년 이상 상환유예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다만, 상환유예사유가 채무조정 약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회차가 12회 미만이라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의 처리

■ 채무관계자가 채권액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체정보를 해제합니다.

- ㅇ 다만,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1회차 분할상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ㅇ 채무조정 효력상실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미 해제한 연체정보를 재등록하며 이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 채무부담액을 일정기간 이상 상환하고 잔여채무액을 일시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과 연체발생일수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본 감면율 (A)	추가감면율(Ⅰ)		추가감면율(Ⅱ)	
	상환기간	추가감면율(B)	연체발생 비율	추가감면율(C)
10%	12개월 이상	1%	1% 미만	4%
	24개월 이상	2%	1%~2% 미만	3%
	36개월 이상	3%	2%~3% 미만	2%
	48개월 이상	4%	3%~4% 미만	1%
	60개월 이상	5%	4% 이상	-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소개

■ 채무조정 신청인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ㅇ (대상) 연체기간 8년 이상인 채무관계자
- ㅇ (지원내용) 채무조정 감면율·채무부담액 조정
- ㅇ (기타 지원)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회수가능재산 제외, 특별 상환유예 등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제공하며, 향후 분쟁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에 본인은 위 설명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설명서 사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채무조정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9세 미만 미성년자 등)

채무조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청인 성명	서명(날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신청업무 종류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	☐ [필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금융거래설정 등)** ☐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금융거래설정 등)** ☐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		

※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 작성시 √ **확인**표시

확약사항

본인(법정대리인)은 위 신청인(19세 미만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등)이 채무조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관련 업무 처리에 따른 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활용동의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신청인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주소
연락처

법정대리인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주소
연락처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 부(父)와 모(母) 모두(1人인 경우 제외)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 본인 명의 기준의 '기본증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1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별지 제8호서식]

일시상환금 상환 최고서

귀하(사)와의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채무부담액을 일시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조정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채무부담액이 상환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상환기한을 최고하오니 변경된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상환기한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사)에 대한 채무조정 효력은 상실됩니다.

아 래

채무조정 약정 내용

신청인 구분	☐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어음발행 · 배서인 ☐ 기타 ( )		
채무조정일		채무부담액	
상환기한			

일시상환금 상환기한 최고

최고 상환기한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별지 제9호서식]

부동산용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20 년 월 일

채 권 자 (근 저 당 권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부점:) 사 장 대리인 (인)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채 무 자	(인)
주 소	
소 유 자 (근저당권 설정자)	(인)
주 소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채무자와 소유자(근저당권 설정자)는 20 년 월 일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주채무, 연대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 및 제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근저당물건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한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1. **(피담보 채무의 범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주채무, 연대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 및 제비용
2. **(채권최고액)** **금 원**

제2조(근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은 현재 근저당물건에 부합되거나 종속된 모든 부대시설은 물론 장래에 추가해서 부합 또는 종속될 물건에 대하여도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근저당물건의 보전 등) ①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대해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담보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멸실·훼손 등 근저당물건의 가치의 하락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③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할 각종 배상금, 보상금 등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한 도래 전이라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4조(근저당물건의 상황에 대한 회보・조사) ①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자가 채권보전의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근저당물건의 현황에 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보하며, 또한 채권자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제절차 이행과 비용부담) ①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변경・경정・이전・이관・말소 등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이나 근저당물건의 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6조(근저당권의 변경・해지 등) 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채무의 전부상환 또는 일부상환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근저당권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변경 또는 해지대상 근저당물건의 선택이나 채권최고액의 감액 등에 대해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채무 및 담보물건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채권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공부와 실제의 불일치 등) 근저당물건의 실제 내용이 본 계약서상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근저당권을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의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는 곧 변경・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8조(근저당물건 매매시 유의사항) 근저당물건을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무인수 등 승계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9조(채무자의 통지의무) ①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주소・성명・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이를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0조(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 또는 근저당물건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1조(특약사항)

■ 근저당물건 목록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0호서식] (2024.10.28. 개정)

자동차용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20 년 월 일

채 권 자 (근 저 당 권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부점:) 사 장 (인) 대리인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채 무 자	(인)
주 소	
소 유 자 (근저당권 설정자)	(인)
주 소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채무자와 소유자(근저당권 설정자)는 20 년 월 일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주채무, 연대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 및 제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근저당물건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한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1. **(피담보 채무의 범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주채무, 연대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 및 제비용
2. **(채권최고액)** **금 원**

제2조(근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채무자는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분할상환금의 납입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근저당물건에 대해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개시 또는 체납처분 착수가 있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즉시 "채권자"에게 피담보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3조(근저당물건의 보전 등) ①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멸실·훼손 등 근저당물건의 가치의 하락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승락을 얻어야 합니다.

②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할 각종 배상금, 보상금 등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여

야 합니다. 채권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한 도래 전이라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4조(근저당물건의 상황에 대한 회보・조사) ①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자가 채권보전의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상태나 근저당물건의 현황에 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보하며, 또한 채권자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제절차 이행과 비용부담) ①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변경・경정・이전・이관・말소 등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드는 비용이나 근저당물건의 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6조(근저당권의 변경・해지 등) 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채무의 전부상환 또는 일부상환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근저당권의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변경 또는 해지대상 근저당물건의 선택이나 채권최고액의 감액 등은 채무 및 담보물건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채권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근저당물건 매매시 유의사항) 근저당물건을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무인수 등 승계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8조(채무자의 통지의무) ①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주소・성명・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이를 채무자와 근저당권 설정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0조(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 또는 근저당물건의 사용본거지를 관할로 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1조(특약사항)

■ 자동차 근저당물건 목록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명	
연식(모델연도)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별지 제11호서식] (2024.10.28. 개정)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통지서(미신고 재산 발견)

1. 귀하(사)의 20(　　)년 (　　)월 (　　)일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채무부담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　　)년 (　　)월 (　　)일 현재 **채무조정 신청 시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2.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에 따라 연체정보가 재등록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고 그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3. 귀하에 대하여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고객님 본인임이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교부 또는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등록 사항이므로 등록정보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4. 아울러, 20(　　)년 (　　)월 (　　)일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은 상실 되었**으므로 총 채무액 중 이미 납부한 분할상환금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 하여야 하며, 채무조정 시 확약사항과 같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채무조정 재약정 가능 여부**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채무관계자명		기준일자	현재

채무조정 약정 내용 및 연체정보 등록(예정)내역

채무조정일		채무부담액	
상환금액		최종납입일	
연체정보등록 예정금액		연체정보등록 예정일자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별지 제12호서식]

분할상환 승인내용 변경 신청서

본인은 20(　　)년 (　　)월 (　　)일 채무조정 신청에 따라 승인받은 채무조정 내용 중 분할상환기간 및 월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을 신청합니다.

아　　래

채무조정 약정 내용

신청인 구분	☐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어음발행 · 배서인 ☐ 기타 (　　)		
채무조정일		잔여 채무부담액	
분할상환기간	개월	월 분할상환금	원

채무조정 변경

분할상환기간	개월	월 분할상환금	원

※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채무조정일로부터 10년 이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 추가감면 Ⅰ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별지 제13호서식]

채무상환 유예(연장) 신청서

공통필수정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주소			

채무상환 유예신청 내용

본인은 현재 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부담액 잔액 및 그 부대채무에 대하여 현재의 재산과 수입으로 상환하기가 어려워 아래와 같이 상환유예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구분	☐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어음발행 · 배서인 ☐ 기타 ( )		
채무조정 승인일	20 년 월 일	채무조정 최종상환일	20 년 월 일
채무부담액	원	채무부담액 잔액	원
약정 분할상환기간	개월	잔여 분할상환기간	개월
상환·유예(연장) 사유	상환유예대상자 유형		
상환유예(연장)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기타 확약 사항

1) 본인은 본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의 채무 내역, 본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하여 귀사가 재(휴)학 중인 대학교 및 해당 관공서 등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본인의 인적사항, 채무내역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무상환 유예는 처음부터 그 효력을 상실됩니다.

2) 또한, 상환유예대상자 유형에 해당하는 자격이 중도 탈락(상실)하는 경우에는 탈락한 날부터 채무부담액의 상환유예는 종료되며, 기존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탈락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기일부터 잔여 분할상환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상환유예 대상자 및 제출서류

구분	유형	유예신청 주기	최장유예 기간	제출서류	비고
생활안정	차상위계층	6개월	2년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자			장애인증명서(또는 유효기간 미경과 복지카드),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보훈대상	보훈대상자 및 유족			보훈대상자증명서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족증 또는 유가족확인서	
의료	2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입원확인서,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서 등 장기입원 또는 질환 증빙서류	
노인	고령자(65세이상)			주민등록표 등본	
아동	다자녀·한부모·영유아가족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기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이재민 (자연·사회재난 피해자)			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심의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승인			-	
자립지원	실직・(휴)폐업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사본 [폐업] 휴・폐업사실증명원	
	중소기업인 (중소기업인 대표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사실증명원)	
	영세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그 밖의 연매출 증빙서류 포함)	
	창업실패사업자			창업기업확인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아이디어 수상사실 증명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참여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등 고용노동부(산하기관) 발급 취업지원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학생		졸업하는 달의 말일	재학증명서	
	미취업청년(졸업자 포함)		3년	졸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사업	-		자활근로자확인서	
	직업교육을 받고있는 자 (공사·공인 직업교육기관)	-	사유해소 시 까지	직업교육 수강증명서	
연령	미성년자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군인	현역입영자·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 또는 군입영 사실 확인서	
특수	구속수감자			수용증명서	
생활안정	기초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자, 기초수급자, 현역입영자, 사회복무요원, 구속수감자, 공사 또는 공인 직업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 상환 유예 해소 이후에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로서 추가로 상환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상환 유예 연장 신청시에도 제출 서류는 동일하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채무상환 유예(연장) 신청 위임장

수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아래 서명 날인한 본인은 위의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위임사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 임 사 항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 유예(연장) 신청 및 관련 행위

붙임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위임인: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별지 제15호서식] (2024.10.28. 개정)

채무조정 효력 상실 예정통지서(연체)

귀하(사)의 20(　　)년 (　　)월 (　　)일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채무부담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　　)년 (　　)월 (　　)일 현재 **분할상환금 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아래와 같이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채무관계자명		기준일자	현재

채무조정 약정 내용

채무조정일		채무부담액	
상환금액		최종납입일	
입금계좌	(　　은행) ***-***-******	담당자	

연체정보 등록(예정)내역

연체 분할상환금		연체이자	별도 안내
연체정보등록예정금액		연체정보등록예정일자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사전통지	1. 채무조정 효력 상실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등의 제3자에게도 제공되어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후에는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되어 신용점수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에 대하여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고객님 본인임이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교부 또는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등록 사항이므로 등록정보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분할상환금 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연체 분할상환금과 연체이자 및 기한 이익 상실 후 발생한 제비용을 납부하고 종전의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1회분 분할상환금과 연체이자 전액 및 채무조정 효력 상실 후 발생한 제비용을 납부하고 기존 채무조정약정이 가능하며, 미납한 분할상환금은 잔여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는 연체 분할상환금의 상환일자에 따라 변경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금계좌에 입금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효력 상실 예정통지서(연체)

귀하(사)의 20(　　)년 (　　)월 (　　)일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채무부담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　　)년 (　　)월 (　　)일 현재 **분할상환금 납부가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아래와 같이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채무관계자명		기준일자	현재

채무조정 약정 내용

채무조정일		채무부담액	
상환금액		최종납입일	
입금계좌	(　　은행) ***-***-******	담당자	

연체정보 등록(예정)내역

연체 분할상환금		연체이자	별도 안내
연체정보등록예정금액		연체정보등록예정일자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사전통지	1. 채무조정 효력 상실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등의 제3자에게도 제공되어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후에는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되어 신용점수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에 대하여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고객님 본인임이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교부 또는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등록 사항이므로 등록정보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분할상환금 납부가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연체 분할상환금과 연체이자 및 기한 이익 상실 후 발생한 제비용을 납부하고 종전의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1회분 분할상환금과 연체이자 전액 및 채무조정 효력 상실 후 발생한 제비용을 납부하고 기존 채무조정약정이 가능하며, 미납한 분할상환금은 잔여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는 연체 분할상환금의 상환일자에 따라 변경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금계좌에 입금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별지 제16호서식] (2024.10.28. 개정)

채무조정 효력 상실 통지서(제3자 강제집행)

귀하(사)의 20(　　)년 (　　)월 (　　)일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채무부담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　　)년 (　　)월 (　　)일 현재 **제3자로부터 귀하의 소유재산에 강제집행이 신청**되어 아래와 같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채무관계자명		기준일자	현재

채무조정 약정 내용

채무조정일		채무부담액	
상환금액		최종납입일	
입금계좌	(　　은행) ***-***-******	담당자	

경매사건내역

경매사건번호		경매물건종류	

연체정보 등록(예정)내역

연체정보등록예정금액		연체정보등록예정일자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사전통지	1. 채무조정 효력 상실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등의 제3자에게도 제공되어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후에는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되어 신용점수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객님에 대하여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고객님 본인임이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교부 또는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등록 사항이므로 등록정보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별지 제17호서식] (2024.10.28. 개정)

채무조정 효력 상실 통지서(파산)

귀하(사)의 20( )년 ( )월 ( )일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채무부담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 )년 ( )월 ( )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의 신청**을 사유로 아래와 같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채무관계자명		기준일자	현재

채무조정 약정 내용

채무조정일		채무부담액	
상환금액		최종납입일	
담당자			

파산(면책)사건 내역

파산사건번호		신청일자	
면책사건번호		신청일자	

연체정보 등록(예정)내역

연체정보등록예정금액		연체정보등록예정일자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사전통지	1. 채무조정 효력 상실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등의 제3자에게도 제공되어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후에는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되어 신용점수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객님에 대하여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고객님 본인임이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교부 또는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등록 사항이므로 등록정보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별지 제18호서식] (2024.10.28. 개정)

채무조정 효력 상실 통지서[(개인)회생]

귀하(사)의 20( )년 ( )월 ( )일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채무부담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 )년 ( )월 ( )일 귀하께서 신청하신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을 사유로 아래와 같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채무관계자명		기준일자	현재

채무조정 약정 내용

채무조정일		채무부담액	
상환금액		최종납입일	
담당자			

(개인)회생사건 내역

(개인)회생사건번호		신청일자	

연체정보 등록(예정)내역

연체정보등록예정금액		연체정보등록예정일자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사전통지	1. 채무조정 효력 상실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등의 제3자에게도 제공되어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후에는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되어 신용점수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객님에 대하여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고객님 본인임이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교부 또는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등록 사항이므로 등록정보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별지 제19호서식] (2024.10.28. 개정)

채무조정 효력 상실 통지서(신용회복위원회 신청)

귀하(사)의 20(　　)년 (　　)월 (　　)일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채무부담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　　)년 (　　)월 (　　)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사유로 아래와 같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채무관계자명		기준일자	현재

채무조정 약정 내용

채무조정일		채무부담액	
상환금액		최종납입일	
담당자			

연체정보 등록(예정)내역

연체정보등록예정금액		연체정보등록예정일자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사전통지	1. 채무조정 효력 상실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등의 제3자에게도 제공되어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후에는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되어 신용점수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객님에 대하여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고객님 본인임이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교부 또는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등록 사항이므로 등록정보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별지 제20호서식] (2024.10.28. 개정)

파산(면책)절차 폐지 등에 따른 채무조정지원 안내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귀하의 채무와 관련하여 파산(면책) 폐지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귀하의 연체정보를 (재)등록할 예정입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재)등록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고 그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3. 귀하에 대하여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고객님 본인임이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교부 또는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등록 사항이므로 등록정보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4. 아울러, 채무내역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채무관계자명		기준일자	현재

연체정보 등록(예정)내역

등록기관		연체기산일	
등록(예정)일자		등록(예정)연체금액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회생절차 폐지 등에 따른 채무조정지원 안내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귀하의 채무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 폐지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귀하의 연체정보를 (재)등록할 예정입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재)등록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고 그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3. 귀하에 대하여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고객님 본인임이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교부 또는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등록 사항이므로 등록정보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4. 아울러, 채무내역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채무관계자명		기준일자	현재

연체정보 등록(예정)내역

등록기관		연체기산일	
등록(예정)일자		등록(예정)연체금액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별지 제22호서식] (2024.10.28. 개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실효에 따른 채무조정지원 안내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귀하의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실효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귀하의 연체정보를 (재)등록할 예정입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재)등록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등의 제3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개인신용평점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고 그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3. 귀하에 대하여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고객님 본인임이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교부 또는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등록 사항이므로 등록정보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4. 아울러, 채무내역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채무관계자명		기준일자	현재

연체정보 등록(예정)내역

등록기관		연체기산일	
등록(예정)일자		등록(예정)연체금액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별지 제23호서식]

대위변제 승낙서

본인 채무관계자 (　　)는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아래의 채무에 대해 아래 기재 대위변제자가 본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있어 이를 승낙(동의)합니다.

아　　래

채무내역

(단위 : 원)

금융회사	주채무자	대출과목	원금잔액	이자	제비용	계

대위변제자

채무관계자 성명		채무관계자 구분	☐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어음발행 · 배서인
대위변제자 성명		채무관계자와의 관계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일자	

20　년　월　일

대위변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채무관계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별지 제24호서식]

대위변제 신청서

본인 대위변제자 (　　)는 채무관계자 (　　)가 상환하여야 하는 아래의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향후 본건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아울러, 본건 대위변제 이후에 채무관계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확약합니다.

아　　래

채무내역

(단위 : 원)

금융회사	주채무자	대출과목	원금잔액	이자	제비용	계

대위변제자

채무관계자 성명		채무관계자 구분	☐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어음발행 · 배서인
대위변제자 성명		채무관계자와의 관계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일자	

20　년　월　일

대위변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별지 제25호서식]

조기상환 신청서

공통필수정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주 소			

본인은 아래 채무의 내용을 확인하며 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금 원을 20 년 월 일(조기상환 승인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까지 상환하면 잔여 채무액은 더 이상 본인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내용

(단위 : 원)

채무조정 신청일		채무 부담액	
분할 상환금		최종 상환일	
잔여 분할상환금		채무조정 약정 만기일	

조기상환계획 (해당 사항에 '√' 표시)

☐ **채무조정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을 완료한 경우**

(단위 : 원)

잔여 분할상환금		조기상환일	
조기상환금액		비고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 - - -		

※ 조기상환금액은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첨부서류 :

1. 채무조정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사본
2.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을 완료한 경우 :
   가.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나. 채무관계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사본 및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자립지원사업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

[별지 제26호서식]

채무완제증서

귀하

귀하의 채무가 아래와 같이 완제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다만, 귀하가 채무조정 신청 시 신고한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에서 확약한 바와 같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담할 채무전액에서 채무조정 이후 상환한 채무금을 차감한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아 래

주채무자		완제일자	
신청인 구분	☐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어음발행 · 배서인 ☐ 기타 ( )		
양도금융회사			
인수채권액		인수일자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별지 제27호서식]

채무관계 종결 확인서

귀하

20 . . . 현재 귀하의 채권 중 아래의 채권에 대한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다만, 본 채무관계 종결 확인서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채무관계가 종결된 채권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모든 채무가 종결(또는 상환)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종결되지 않은 채무는 별도의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아 래

주채무자			
신청인 구분	☐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어음발행 · 배서인 ☐ 기타 ( )		
양도금융회사			
인수채권액		인수일자	
종결일자		종결사유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별지 제28호서식]

성실상환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액 잔액 감면 신청서

본인은 채무조정 신청일 이후 채무부담액(약정금액)의 75%이상을 성실히 상환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채무부담액 잔액 및 그 부대채무를 상환하기가 어려워 아래와 같이 채무부담액 잔액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아 래

채무의 내용

채무조정 신청일		채무부담액(a)	
분할 상환금(b)		최종 상환일	
채무부담액 잔액		채무조정 약정 만기일	
상환율(b/a)			

상환사유 및 제출서류

감면신청 사유	

※ 불가피한 사유는 채무조정 신청일 이후 발생한 경우이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사회취약계층)으로 채무조정을 승인받은 사항과 다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유사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잔여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감면 신청 :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유형	세부요건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종전 1급~3급) 인한 노동력 상실	장애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진단서	

20 년 월 일

채무관계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주 소 :

전 화 번 호 :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별지 제29호서식]

채무 추가감면 신청서

본인은 본인의 채무 추가감면에 관한 사항을 채무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 래

공통필수정보 및 공통부가정보

성명		생 년 월 일	(___세)
주소			
부양가족수*	명	본인 소유재산**	□없음 □있음 (내역 별도 작성)
소득구분	□ 근로·사업 □ 연금·임대 □ 기타 ((월 소득		) 원)
주거구분	□ 본인소유 □ 전·월세 □ 기타 (		)
취약계층 유형	□ 고령자(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채무원금	원	감면 후 채무부담액	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가족수 ** 법적조치된 채권·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을 포함

제출서류

공통 서류	최근 3개년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주민등록표 등본 및 신분증 등
세부진술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지출사항에 대한 영수증, 통장 지출내역 등

확약사항

1) 본인은 위의 각 항목을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였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감면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된 채무부담액을 성실히 상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탄력적 추가감면 신청 세부진술서

채무발생경위 등

추가감면 이후 변제계획

기타 위원회가 참고할 사항

[별지 제30호서식]

회수가능재산 대상제외 신청서

본인은 아래 재산에 대해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무조정부담액 산정시 회수가능재산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아 래

재산의 내용

연번	재산의 종류	재산의 표시 (지번 등)	소유관계 (단독,공유, 합유,총유)	지분	재산의 가액	비고

※ 제출서류: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외 신청 내용

신청사유	※ 신청사유에 대한 세부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확약사항

현재, 본인은 위의 신청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무조정약정은 효력이 상실되며 채권행사 및 법적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채무관계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주 소 :
전 화 번 호 :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별지 제31호서식] (2024.10.28. 신설)

채무조정 결과통지서(거절)

귀하께서 요청한 '채무조정'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거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및 연락처 :

아 래

신청인 기본사항

채무관계자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거절사유

☐ 채권의 소송, 조정, 중재 등 절차 진행 중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중	☐ 법원의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중
☐ 당사 수정·보완 요청 3회 이상 불응	☐ 소멸시효 완성	☐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 없이 재요청
☐ 기타 내규에 따른 거절사유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효력 상실 통지서(약정 해제 요청)

1. 귀하(사)의 20(　　)년 (　　)월 (　　)일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채무부담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　　)년 (　　)월 (　　)일 귀하께서 **채무조정 약정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채무내역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채무관계자명		기준일자	현재

채무조정 약정 내용

채무조정일		채무부담액	
상환금액		최종납입일	
담당자			

연체정보 등록(예정)내역

연체정보등록예정금액		연체정보등록예정일자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사전통지	1. 채무조정 효력 상실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등의 제3자에게도 제공되어 개인신용평점(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후에는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되어 신용점수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객님에 대하여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고객님 본인임이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교부 또는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신용도판단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의무등록 사항이므로 등록정보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별지 제33호서식] (2024.10.28. 신설)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유예 신청서

공통필수정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주소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 유예신청 내용

본인은 현재 귀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부담액 잔액 및 그 부대채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에 의해 상환하기가 어려워 아래와 같이 상환유예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구분	☐ 주채무자 ☐ 연대보증인 ☐ 상속인 ☐ 어음발행 · 배서인 ☐ 기타 ( )		
채무조정 승인일	20 년 월 일	채무조정 최종상환일	20 년 월 일
채무부담액	원	채무부담액 잔액	원
약정 분할상환기간	개월	잔여 분할상환기간	개월
유예 사유	유예대상자 유형		
유예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유예 대상자 및 제출서류

구분	유형	유예신청 주기	제출서류	비고
의료	3개월 이상 장기입원	3개월	입원확인서,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서 등 장기입원 또는 질환 증빙서류	
기타	이재민(자연·사회재난 피해자)		재난피해사실 확인서	
	혼인·장례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청첩장 [장례]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확인서	
자립지원	실직・(휴)폐업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사본 [폐업] 휴・폐업사실증명원	

※ 모든 유형은 채무조정 약정 이후에 발생한 것에 한하며, 모든 서류는 약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타 확약 사항

1) 본인은 본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의 채무 내역, 본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하여 해당 관공서 등에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본인의 인적사항, 채무내역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무상환 유예는 처음부터 그 효력을 상실됩니다.
2) 또한, 유예대상자 유형에 해당하는 자격이 중도 탈락(상실)하는 경우에는 탈락한 날부터 채무부담액의 유예는 종료되며, 기존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탈락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상환기일부터 잔여 분할상환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별지 제34호서식] (2024.10.28. 신설)

채무(변제)확인서

귀하

귀하의 채무가 아래와 같이 변제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아 래

채무에 관한 사항(채무조정 약정일 기준)

양도금융회사	채무조정 약정일 기준 채무의 표시(원)				비 고
	원 금	이 자	비 용	소 계	

채무상환 내역(채무(변제)확인서 신청일 기준)

신청일자	상환한 채무부담액(원)				변제방법
	원 금	이 자	비 용	소 계	

채무변제 후 잔존채무 내역

양도금융회사	채무부담액(원)				비 고
	원 금	이 자	비 용	소 계	

연락처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주 소

기타 사항

20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